

http://council.gwangjin.go.kr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광진구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

2017. 11. 27. ~ 12. 20.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 회의 열려 2018년도 예산안 및 상정안건 등 처리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지난 11월 27일 오전 9시 올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정례회 첫 날인 11월 27일 김창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은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시대의 원년이 될 수 있다. 지방분권으로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관치중심이 아닌 주민중심, 주민참여시스템으로 진정한 주민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합의의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구도 갈등조정관제도를 도입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다양한 의견수렴 및 소통으로 갈등을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세대 간 분업 및 협업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제3연령기인 중년부터 80세까지의 연령층을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 시민사회 영역에서 경험과 지혜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구의회도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 양극화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제212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인 김창현 의장

이번 정례회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하였다. 정례회 일정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상정안건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예산 및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2018년 2월호에 게재 예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김기란 의원, 부위원장 정관훈 의원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란)는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다.

2018년도 광진구 예산액은 4,441억5천만원, 기금은 959억8백만원으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처리안건

-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복지건설위원회 위원 공동발의)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복지건설위원회 위원 공동발의)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의원 발의 조례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gwangjin.go.kr>)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현정 의원]

〈 제정이유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의회 동의 및 보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의무조항 등의 신설로 기존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전부 개정

〈 주요내용 〉

-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보완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의회 동의·보고 조항 신설
-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관련 규정 보완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현정 의원]

〈 제정이유 〉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통해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정관훈 의원]

〈 제정이유 〉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도 점증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

〈 주요내용 〉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규정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
- 학대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 관련정보 제공의 의무규정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
[공영목, 김기란, 김수범, 박삼례,
이상욱, 정관훈, 지경원 의원]

〈 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
- 행·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 경력단절여성 등의 정책 마련 위해 정보수집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

〈 제정이유 〉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새롭게 밝아오는 2018년에는 그 어느해보다 행복하고
사랑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7년 광진구의회는 '일하는 의회, 정책을 생산하는 의회'를
목표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민 행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광진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

